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17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고동진

박충권 · 강대식 · 최보윤

이헌승 • 윤한홍 • 김소희

백종헌 • 권영진 • 이달희

김승수 · 신동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 였음.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 과 함께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 중 이동통신 등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하여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강화와 인증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8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이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생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4.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8(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장에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할 때 제47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
증) ① ~ ③ (생 략)	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	
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	
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생
	성・처리하는 정보의 규모, 침
	해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8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	
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	
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⑨ (생략)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① · ② (생 략) <신 설>

.	<u>0]</u>	경우	사루	·관리	<u>는</u>
현장심사와	서	면심	사의	방법	을
병행하여 실	길시	한다.			
⑨ (현행과	같	음)			

10	 	 	

- 1. ~ 3. (현행과 같음)
- 4.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경우
- ①·① (현행과 같음)

제47조의8(과징금의 부과)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 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 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 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

<신 설>

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 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7조의 의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